

##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칙

재정 2010년 11월  
개정 2012년 11월  
개정 2015년 11월  
개정 2016년 11월

### 제 1 장 총칙

#### 제 1 조 (명칭)

이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라고 하며, 영문으로는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ae Chapters of North America 로 한다.

#### 제 2 조 (목적 )

이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들을 연합하여 지회간의 상호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이회는 동창회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이나 도구로 이용 할 수 없다.

#### 제 3 조 (관계)

모든 지회는 모교 총동창회에 속하며 총동창회 회칙을 준수한다.

각 지회는 지회자치체로 운영되며,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. 이회는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한다. 이회는 지회연합회 총회를 주관하며 각 지회에 대하여 관할 및 통제할 권리가 없다.

이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#### 제 4 조 (사무소 )

이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 된 지역에 둔다.

### 제 2 장 회원

#### 제 5 조 (회원 )

1. 이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, 북미주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.
2. 지회가 조직 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동창은 가장 인근의 현존 지회에 소속된 회원으로 한다.
3. 회원의 자격은 서울 총동창회의 회칙에 준한다.

#### 제 6 조 (권리 )

1.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.

### 제 7 조 (의무 )

회원을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, 본 회의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 각 지회는 소정의 연합회비 즉 당연직 이사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.

## 제 3 장 조식과 운영

### 제 8 조 (구성)

이 회에는 총회, 임원회, 이사회, 감사 및 고문을 둔다.

### 제 9 조 (총회 )

1. 총회는 이 회의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.
2. 총회는 년 1회, 10월 혹은 11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3.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**출석회원 과반수**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 10 조 (임원회)

1. 임원회는 이 회의 업무 집행 기관으로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- 1) **회장** (당 해의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지회장 ) **1인**
  - 2) **부회장** (다음 해에 총회를 주최할 지회의 회장 ) **1인**
  - 3) **총무 1인**
  - 4) **서기 2인**
  - 5) **회계 1인**
  - 6) **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 1인**
2. 임원회는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.

### 제 11 조 (임원의 선임과 임기 )

1. 회장은 당 해의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지회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그 다음 해의 총회를 주최 할 지회의 지회장이 된다.
3. 총무, 제 1 서기 및 회계는 회장이 소속된 지회에서 임명한다.  
제 2 서기는 서기 경험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.
4. 회원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담당과 제 2 서기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5. 회원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담당과 제 2 서기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**이 회의** 회계연도에 준한다.

### 제 12 조 (임원의 직무 )

1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,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집행/ 통괄하며, 총회와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.  
**회장의 유고시에는** 총회를 주최하는 지회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부회장은 **회장과 협력하여** 이 회의 제반 업무 및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다.
3.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, 서기, 회계와 더불어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4. 서기는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총회 후 30일 이내에 임원과 이사들에게 발송하고, 그 외의 모든 회의록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
5. 회계는 이 회의 회계연도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며, 예산과 감사의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임원회,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6. 회원 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을 각지회장과 협력하여 모든 회원의 신상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원 명단을 작성, 관리하고 유지하며, 회장 총무에게 수시로 현황을 보고한다.

#### 제 13 조 (이사의 선임과 임기 )

1. 이사회는 **당연직 이사**, 선출이사, 및 후원이사로 구성되며, 이사장이 이 회를 대표한다.
2. 이사장은 직전 회장으로 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3. 당연직 이사는 이 회의 각 지회장으로 한다.
4. **선출이사는 각지회의 직전회장, 전전회장으로 한다. 단 각지회 사정에 따라 그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있다.**  
**선출이사는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총회 이사회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**
5. 선출이사의 수는 각 지회에서 1-2 명으로 한다.
6. 후원이사는 **이 회의 발전에** 기여하기를 자원하는 자로 각 지회장이 추대하며, 그 임기는 본인이 사임 할 때 까지로 한다.

#### 제 14 조 (이사회 운영 )

1. 이사회는 총회 주최를 결정, 회칙개정,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, 감사, 회원정보 및 웹사이트 관리 담당의 선출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며, 또한 그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본 회칙의 범위 내에서 정 할 수 있다.
2.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3.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.
4.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최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5. 이사는 이사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.
6. 후원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7.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이회에 유해한 **행위를**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.

#### 제 15 조 (감사 )

1. 이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2.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3. 감사는 이 회의 회계, 결산을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4. 감사는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, 발언 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 (고문)

1. 이 회의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2. 고문은 이 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에 협조한다.
3. 고문은 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, 발언할 수 있다.
4.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5. 자격 : 속한 지회에서 지회장을 역임하고, 북미주지회 연합회 이사로 5년 이상 봉사하고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.

### 제 4 장 재정

#### 제 17 조 (경비 )

1. 이 회의 재정은 이사회비, 행사보조금, 기부금, 광고비 등으로 한다.
2. 당연직이사 회비는 년 \$200 이며, 개인이나 지회의 예산에서 충당 할 수 있다.
3. 선출이사 회비는 년 \$200 이상이며, 개인이 충당한다.
4. 후원이사 회비는 년 \$200 이상으로 한다.
5. 총회와 그에 따른 행사비는 주최 지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지 직전 총회로부터 \$10,000을 지원 받고, 다음 총회에 같은 액수를 지원 하여야 한다.
6. 이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### 제 5 장 회칙 개정

#### 제 18 조 (회칙 개정 )

이 회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의결권이 있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,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 개최 60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2/3 찬성으로 가결 한 후,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.

#### 부칙

1.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의 회칙과 통상 관례에 따라 준 한다.

2.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.
3. 고문추천은 자기 지회에서 고문이 될 자격이 있는 동창을 추천한다.  
자기 지회에서 고문 할 만한 동창이 없을 경우 다른 지회의 동창을 추천할 수 있다. 단 고문 추천을 받은 동창의 지회에서 추천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한함.